

제2장

초상권 침해 사례

사례 32

새누리당 김태호 국회의원 후보와 인사를 나누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477, 2012서울조정478(병합) 각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이데일리 주식회사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2. 04. 06.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4·11 총선 승부처로 김해 을을 다루면서 신청인이 김해 을 후보 중 한 명이었던 김태호 새누리당 후보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사진이 찍힐 당시 촬영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신문에 사진이 게재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후보의 선거운동원이나 주위의 오해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조정제에 같은 결정을 했고, 피신청인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에 자동소제기가 되었으나, 피신청인이 2백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자 신청인은 소송을 취하하였다.
- 한편, 신청인은 인터넷 이데일리로부터 동일한 기사를 전송받아 게시한 네이버(2012서울조정479), 모네타뉴스(2012서울조정480)에도 각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네이버와 모네타뉴스 모두 조정대상보도를 삭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각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①

이데일리 : 『“경륜 보고 뽑아야제” vs “새누리 안 좋아해요”』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3일자 2면)

내 용: 두 차례 도지사 경력과 함께 끈끈한 스킨십으로 밀바닥 민심을 파고 드는 김태호(49) 후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으로 겸손함을 갖춘 성실함으로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김경수(44) 후보가 경남 김해 읍에서 팽팽한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김해는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진영읍 봉하마을을 끼고 있어 ‘상징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인 ‘낙동강 벨트’와 맞닿아 있어 전략적 거점이다. 부산·경남(PK) 지역의 총선 승패가 12월 대선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총선 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2일 오전 9시 20분쯤 경남 김해 ○○ 스포츠센터에서 만난 김태호 후보는 이장협의회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를 건넸다. 그는 “욕롭니다. 식사는 하셨습니다”라고 친숙함을 드러내며 ‘눈높이 유세’를 이어갔다. ○○면 주민인 강○○(62)씨는 “김 후보는 경륜도 있고, 인사성도 바른기라. 내는 이번에 꼭 김후보 찍을란다”라고 말했다.



‘경남의 아들, 김해의 일꾼’이라는 선거 구호를 사용하는 김 후보는 힘있는 지역 일꾼임을 강조하고 있다. 두 차례 경남도지사를 지냈을 만큼 풍부한 국정 운영 경험을 갖췄고, 지난해 4월의 김해 읍 국회의원 재보궐에서 당선돼 현역 의원으로서의 이점도 지니고 있다.

김 후보는 “김해는 야당 성향이 강하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도 많아 결코 쉽지 않은 곳”이라며 “하지만 지역 주민은 여야를 떠나 일 잘하는 지역 일꾼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같은 날 오전 10시쯤 김경수 후보는 대형할인점 롯데마트 장유점에서 열린 노래교실에 참석, 주부들과 율동을 섞어가며 애창곡인 ‘무조건’을 열창했다. 투표일을 채 열흘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스투럼없이 다가가기 위해 직접 마이크를 들었다.

김 후보는 “노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가 녹아있는 김해를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세력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해에서 풀어야 할 일이 많다”며 “(민주통합당 소속인) 김해시장·경남도지사와 함께 열심히 일 할 후보를 뽑아달라. 대통령 옆에서 배운 대로 푼박푼박 열심히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의 선거 명함과 어깨띠는 ‘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김 후

보는 ‘정치를 바꿔라. 김해를 바꿔라’를 선거 구호로 내세우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할 적임자로 자처하고 있다.

주민 김○○(25)씨는 “또래 가운데 새누리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취업도 안되고, 경제 살리기에 실패한 현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 올 여론조사 결과는 오히려 뒷지락하며 ‘오리무중’ 판세를 보이고 있다. 최종 결과는 선거날까지 가봐야 한다는 평가다. KBS 조사결과는 김태호 후보(42.9%)가 김경수 후보(34.9%)를 큰 차이로 앞섰으며, MBC와 리얼미터의 조사는 김경수 후보(46.0%)가 김태호 후보(42.7%)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②

인터넷 이데일리 : 『4·11 총선 승부처(12) 김해 올 김태호 대 김경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3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문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05. 0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으로 자동소제기되었다가, 피신청인이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소송이 취하됨



사례 33

교정직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들의 인터뷰 내용을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673·674, 2012서울조정675·676(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강 ○ ○, 2. 장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매일방송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2. 05. 03.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교정직 9급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문제점과 공무원 선발의 투명성이 의심된다고 전하면서 수험생들과의 인터뷰 장면을 방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해당 인터뷰 장면은 1년여 전에 촬영된 것으로 교정직 공무원 시험과는 관련이 없고 자신들은 교정직 시험을 준비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교정직 경력시험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인터뷰 한 것처럼 피신청인이 편집, 보도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보도 및 각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인터넷 MBN에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신청인들에게 각 1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한편, 신청인은 인터넷 MBN으로부터 동 기사를 전송받아 게시한 네이버(2012서울조정677·678), 네이트(2012서울조정679·680), 다음(2012서울조정681·682)을 대상으로도 조정을 신청했고, 심리결과 네이버, 네이트와 다음의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각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①

MBN : 「MBN 뉴스8」 프로그램 ‘이상한 경력 경쟁’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3일자 20:00)

내 용 : ▷ 앵커 : 일반적으로 경력직 채용이라고 하면, 특정 분야의 경력이나 학력 또는 자격증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경력도 없이, 더구나 시험을 덜 치르고도 똑같은 9급 공무원에 채용될 수 있는 이상한 시험이 있습니다. 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9일 공고된 교정직 9급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입니다. 임상심리사와 간호사, 중국어 우수자와 함께 일반직도 141명을 뽑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심리사나 간호사 면허증 등의 자격요건과 달리 일반직은 별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20살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1월 공고된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계획입니다. 역시 학력과 경력 제한이 없습니다. 다

만, 경력경쟁은 형사소송법과 교정학, 9급 공채는 여기에서 국어와 영어, 한국사 3과목을 더 봐야 합니다. 경력이 없어도 경력경쟁에 응시할 수 있고, 오히려 9급 공채보다 시험 부담도 덜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수험생들은 당연히 경력경쟁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교정직 9급 공채 경쟁률은 17대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한 지방교정청 경력공채, 즉 특채 경쟁률은 무려 91대1에 달했습니다. 9급 공채 수험생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 교정직 9급 공채 수험생 인터뷰 : “진짜 2년, 3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그 기간뿐만 아니라 거기서 드는 허탈감이 굉장히 정말 큼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한 교도소에 두 시험의 차이점을 물어봤지만, 똑같은 답만 돌아옵니다.

▷ ○○지방교정청 교도소 관계자 인터뷰 : “(일반 경력이나 9급 공채나 똑같은 거 아닌가?) 9급 공채 같은 경우는 5과목을 쳐야 하고요, 이거는 2과목만 치면 됩니다.”

더구나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는 9급 공채와 달리 경력경쟁은 출제 문제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력 없이, 시험을 덜 치르고도 똑같은 9급 교도관이 될 수 있는 이상한 경력경쟁, 공무원 선발의 투명성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같○○입니다.



②

인터넷 MBN : 『‘경력 없는’ 경력시험…이상한 공무원 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5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을 MBN-TV <MBN 뉴스8>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MBN(<http://www.mbn.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2)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 (2)가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 (2)를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1. **제 목** : ‘경력 없는 경력시험…이상한 공무원 선발’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4월 23일 뉴스프로그램에서 “‘경력 없는’ 경력시험…이상한 공무원 선발”이라는 제목으로 방송 중 교정직 공무원 공채 수험생의 인터뷰를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영상취재하고 삽입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터뷰는 과거 1년 전 위 보도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주제의 인터뷰의 미방송분을 마치 위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영상취재한 인터뷰인 것처럼 보도하여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인터뷰 내용임을 밝힙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2)>

1. **제 목** : ‘경력 없는 경력시험…이상한 공무원 선발’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25일자 사회면에 “‘경력 없는’ 경력시험…이상한 공무원 선발”이라는 제목으로 방송 중 교정직 공무원 공채 수험생의 인터뷰를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영상취재하고 삽입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터뷰는 과거 1년 전 위 보도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주제의 인터뷰의 미방송분을 마치 위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영상취재한 인터뷰인 것처럼 보도하여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인터뷰 내용임을 밝힙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1.과 신청인2.에게 각각 2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경력 없는 경력시험…이상한 공무원 선발’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25일자 사회면에 “경력 없는 경력시험…이상한 공무원 선발”이라는 제목으로 방송 중 교정직 공무원 공채 수험생의 인터뷰를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영상 취재하고 삽입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터뷰는 과거 1년 전 위 보도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주제의 인터뷰의 미방송분을 마치 위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영상취재한 인터뷰인 것처럼 보도하여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인터뷰 내용임을 밝힙니다.

2. 피신청인은 2012년 6월 8일 이내에 MBN(<http://www.mbn.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위 1항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1항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2012년 6월 8일 이내에 신청인들에게 각각 일백만 원을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위 1~3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05. 18.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인터넷 MBN에 정정보도, 손해배상금 각 100만 원 지급

인터넷 MBN : 『**경력 없는 경력시험… 이상한 공무원 선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7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34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직원인 신청인이 은행고객을 안심시키는 장면을 동의 없이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710, 2012서울조정711(병합) 각 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2. 주식회사 아이엠비씨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2. 05. 15.

사건개요

- 피신청인들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저축은행 영업장 장면을 촬영, 보도하였는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직원인 신청인의 초상(신청인을 포함한 저축은행 직원들이 고객들을 안내하는 모습)을 약 3초간 방송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방송사 취재 당시, 촬영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안면 등이 모자이크 등의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초상이 공개된 탓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직원인 점이 지인 등 주위에 알려지게 되어 고객들로부터 시비나 분풀이의 표적이 될 우려가 있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신청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초상이 노출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고, 신청인의 피해 정도나 보호가치가 보도의 공익성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정대상보도

①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저축銀 계열사예금인출 줄었다'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7일자 21:00)

내 용 : ▷ 앵커 : 어제 저축은행 영업정지 발표 후 첫 영업일인 오늘, 다행히 우려했던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는 없었습니다. 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어제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의 계열이어서 불똥이 우려된 서울의 한 저축은행. 아침 9시

문을 열자 수십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일부는 예금을 해약했습니다.

▷ 저축은행 예금자 : “불안하게 사느니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살려고...”

▷ 기자 : 하지만 대부분은 은행 창구의 분위기를 살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축은행 예금자 : “(오늘 인출 안 하셨어요?)” “인출 안했어요.” “(그러면 불안해서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나왔어요.”

▷ 기자 : 많은 사람들은 5천만 원 이하 예금은 법으로 보호되고, 중간에 해약하면 약정된 이자를 못 받는다는 설명을 듣고, 발길을 집으로 돌렸습니다. 예금 인출은 오후 들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어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5개 계열 저축은행에서 빠져나간 예금은 모두 4백억 원. 영업정지 발표 전인 지난 금요일 인출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 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예금인출 사태는 완전히 진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 한 때 영업정지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던 한 대형 저축은행은 오늘 오히려 예금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는 오는 10일부터 가지급금을 지급한다는 설명회가 차분하게 열렸는데, 참석자들은 대부분 60~70대 노인들이었습니다. MBC뉴스 서○○입니다.

②

iMBC : 『저축銀 계열사 예금인출 줄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7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각 2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기각 결정

기각 결정서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주) 문화방송은 MBC-TV 2012. 5. 7. 21:00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계열사 예금인출 줄었다’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의 4개 저축 은행 영업정지 발표 이후 첫 영업일인 2012. 5. 7.의 저축은행 영업장의 상황을 관련 화면과 함께 보도(이하 ‘이 사건보도’라 한다)하였고, 피신청인 (주)아이엠비씨는 아이엠비씨의 뉴스홈페이지(<http://imnews.imbc.com>)를 통하여 ‘저축銀 계열사 예금인출 줄었다’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보도를 다시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나. 피신청인 (주) 문화방송은 이 사건보도에서 저축은행 영업장 장면을 촬영, 보도하였는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직원인 신청인의 초상(신청인을 포함한 저축은행 직원들이 고객들을 안내하는 모습)은 보도분량 총 1분 33초 중 후반부의 ‘어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는 오는 10일부터 가지급금을 지급한다는 설명회가 차분하게 열렸는데 참석자들은 대부분 6, 70대 노인들이었습니다.’라는 기자멘트와 함께 약 3초간 노출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주) 문화방송의 취재 당시, 촬영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안면 등이 모자이크 등의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초상이 공개된 탓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직원인 점이 지인 등 주위에 알려지게 되고, 고객들로부터 시비나 분풀이의 표적이 될 우려가 있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0. 제5조 (인격권 보장 등)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

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 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0. 제18조(조정신청)

② 피해자는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0. 제30조(손해의 배상)

①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나. 초상권의 침해 여부

1)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기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해 살피건대, 신청인의 초상이 비교적 짧은 시간이나마 방송에 노출된 점은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조정신청서의 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촬영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나 명시적으로 촬영 및 공표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 판단되나, 이 사건보도의 주된 내용

이 일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게 된 예금자들의 대응과 축은행 등의 후속조치 등을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것으로서 공익 목적이 있고, 초상이 노출된 해당 화면이 저축은행 영업장을 단순 촬영한 것일 뿐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비록 신청인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직원임이 지인들에게 알려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가 객관적으로 용인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어 피해의 정도와 피해 이익의 보호가치가 공익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장면을 촬영, 방영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012. 05. 25.



사례 35

무분별한 음주문화 실태를 방영하면서, 지하철에서 잠이 든 신청인을 무단으로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976 손해청구

신 청 인 : 안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2. 06. 2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음주폭력에 관해 보도하면서 술로 인해 인사불성이 된 지하철 승객의 모습으로 지하철에서 잠들어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방송에 내보낸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취재 당시에 촬영 거부 의사를 밝혔고 해당 영상의 방송 보도에 동의한 적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초상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정대상보도는 '주폭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음주 후의 폭력성 등에 대해 다루었는데, 이러한 내용의 방송에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신청인의 모습을 방영하여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도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 하였다.

조정대상보도

KBS-2TV : 「V특공대」 프로그램 '622회 - 실태보고! 주폭과의 전쟁'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22일자 21:50)

내 용 : ▷ 리포트 : 그만큼 술로 얼룩진 현장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매일 취객과의 전쟁을 치룬다는 서울의 한 지하철 역.

▷ 녹취 : “일어나세요”

▷ 리포트 : 밤 열한시가 넘으면 자기 집 안방인양 객차에서 잠든 취객을 상대 하느라 역무원들 진땀을



팬다.

▷ 녹취 : “내리세요! 종착역이에요. 내리세요.”

▷ 리포트 : 인사불성 취객들 그나마 순순히 따라주면 고마운 일.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 후 경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함



사례 36

음악적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 자녀 선발을 위한 오디션 장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충북조정31, 2012충북조정32(병합) 각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충청리뷰사, 2. 주식회사 충북인뉴스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12. 05. 2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청주 음악인들이 재능기부단체에서 재능있는 저소득가정 아이를 선발하기 위한 오디션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모습을 촬영하여 게재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되었고 그 사진이 신문에 게재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적도 없으므로 초상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피신청인들에게 각 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각 5십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①

충청리뷰: 『**꿈과 열정 있는 아이들 모여라**』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4일자 B2면)

내 용: ‘꿈과 열정이 있는 아이들 모두 모여라’ 음악인들의 재능기부단체 ○○○은 말 그대로 ‘나눠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뜻한다. 재능은 있지만 돈이 없어 꿈을 펼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음악인들이 모여 올해 1월 창립총회를 가졌다. 앞으로 미술인들의 참여도 확대해 예술인들의 재능기부단체로 키워간다는 계획이다.

바로 이 ○○○이 지난 3월 출범식에 이어 4월 오리엔테이션까지 가졌다. 꿈을 펼치고 싶어하는 저소득 가정 아이들 32명의 신청서를 받은뒤 청주를 6대 권역으로 나눠 5~7명씩 오디션을 진행하고 있다. 꿈과 열정, 재능있는 아이들을 선발해 피아노, 성악, 현악기(바이올린·첼로), 관악기(플루트), 등을 지도하기 위해서다.

멘티로 선정되는 꿈나무는 앞으로 멘토로부터 무료로 지도를 받게 된다. 지난달 29일 ○○동의 한

학원을 찾았을 때에도 주말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피아노 레슨 오디션을 받기 위해 초중학생 5명이 어머니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은 재능기부단체 ○○○을 총괄기획한 임○○(임○○ 피아노 학원장) 실장이 피아노 레슨 오디션을 진행하고 있었다.

친목모임이 정식기부단체로 성장

러시아상트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증평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임 실장은 청주에서 젊은 음악인들로 구성된 라포르짜 오페라단을 총괄기획하기도 했다. ○○○은 지난해 10월 예술인들의 친목모임으로 첫 출발을 했다. 본래 청주보호관찰소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음악치료, 재능기부도 해 왔다.



그러다 청주아동복지관을 만나면서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1대1 맞춤형 음악 레슨을 기획하게 됐다. ○○○ 회원은 등록된 음악인만 53명에 이른다. 이들은 앞으로 재능기부를 받겠다고 신청한 32명의 오디션을 진행해 재능과 열정이 보이는 멘티들을 선정한 뒤 멘토가 되어 개인레슨을 하게 된다.

○○○ 임○○ 실장은 “이번에 진행되는 오디션은 재능있는 멘티를 선정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열정이 있는 학생을 면접을 통해 가려내는 것이다”며 “○○○ 선생님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재능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음악공부를 한 자신의 경험에 비쳐 재능은 있지만 돈이 없어 꿈을 펼치지 못하는 후학을 양성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악기 사주려 자선음악회 계획

○○○의 앞으로 계획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멘티들에게 가을 전에 악기를 사주기 위한 자선음악회를 여는 것이다. 또 올해가 가기 전에 겨울에는 멘티들이 ○○○ 후원을 해주고 있는 운영진과 부모들을 모셔놓고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음악회도 계획하고 있다. 임 실장은 “꿈과 열정이 있는 멘티를 선정하기 위해 일일이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며 “연락없이 오디션에 빠지거나 음악레슨에 빠지는 학생들도 제명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학원에 다녔던 아이들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전제 아래 무료레슨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며 “○○○ 재능 기부는 1년여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될 것이다. 다만 ○○○ 재능기부단체가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올라가면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최소의 경비를 받고 개인레슨도 할 예정이다. 이는 더 많은 멘티들에게 재능기부도 하고 음악인들의 최소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함이다”

고 설명했다.

끝으로 임 실장은 “기왕이면 예술인들의 재능기부단체 ○○○의 활동이 많이 전파되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기업인들이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악기 등을 후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 같은 후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도 멘티들의 실력을 끌어 올려 각종 자선음악회를 여는 기회를 앞당길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②

충북인뉴스 : 『꿈과 열정 있는 아이들 모여라』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2012년 7월 31일까지 각 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들 및 피신청인들 임직원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07. 1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각 50만 원 지급

사례 37

백화점 장기 세일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물건을 구경하는 신청인들(예비 신랑신부)의 모습을 몰래 촬영,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중재26 손배청구
 신청인 : 1. 이 ○ ○, 2.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인터넷 한국일보
 중재부 :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 2012. 02. 03.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중재대상기사에서 영가판매를 하고 있는 백화점 판매대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신청인들의 상반신 초상을 게재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본인들의 동의 없이 사진이 촬영·게재됨에 따라 초상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었고 보도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2012서울조정975)을 신청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1차 조정기일 심리 전에 양 당사자가 관련 분쟁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중구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였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신청인들에게 각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중재결정을 하였다.

중재대상보도

인터넷 서울경제 : 『대한민국은 지금 세일중』 백화점 역대 최장기 세일…마트도 50% · 최저가 할인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4일자)

내 용 : 백화점 · 대형마트 · TV홈쇼핑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사실상 ‘연중 세일’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신장세를 기록한 마트 업계에서는 가격을 일시적으로 내리는 백화점 식 ‘세일 판매’가 보편화됐다. ‘상시 저가’를



앞세운 마트는 '세일' 문구의 사용 자체를 극히 꺼려왔지만 이달 들어 반값 세일마저 일상화된 것.

롯데마트는 다음달 4일까지 총 400여개 인기 품목의 가격을 최대 반값까지 내리는 할인전을 2주간 진행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지난 5월 할인쿠폰 사용 비중이 30%로 지난해보다 2배나 늘어나는 등 가격인하 상품에만 고객이 몰려 시장점유율 1~2위 상품만 골라 유례없는 할인전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홈플러스도 개당 700원인 초밥을 400원으로 일시 할인하는 등 전매장을 '50%' '1+1' '최저가' 등으로 도배한 사실상의 할인전을 6~13일 진행했다.

연 4회 세일을 정례화하는 백화점도 5월부터 시작된 일부 브랜드 세일이 오는 7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부터 정기세일에 앞서 7일간의 '브랜드 세일'에 돌입한 백화점들은 통상 7월 중순 마무리해온 세일 기간을 다음달 말까지로 2배가량 연장해 총 38일이라는 역대 최장기 세일전에 나선다. 수입 고가 브랜드의 경우 6월 정기 세일에 앞서 '노세일 시즌'으로 꼽히는 5월부터 할인에 돌입하는 브랜드가 속출했고 세일 참여 브랜드 수도 역대 최대였다. 할인율을 50%로 높인 브랜드가 나오는가 하면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할인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불황에 강한 업태로 지목됐던 홈쇼핑업계는 지난달 역대 최대의 사은품 공세에도 '이름값'이 무색할 정도로 성장률이 둔화되자 이달 들어 '가격 파괴' 전략으로 급선회했다. GS샵·CJ오쇼핑 등은 '상반기 세일전'을 통해 인기 상품 가격을 상반기 최저가로 내놓고 있다.

가격에 가장 덜 민감한 것으로 알려진 편의점 업계도 가격 인하를 단행한 업체가 나왔다. 미니스톱은 불황으로 편의점 고객들도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함에 따라 21일부터 소주·콜라·라면 등 인기 품목 9종의 가격을 평균 17% 인하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염가 판매 전략은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정상가에 대한 의구심으로 연결돼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도 기뻐하기 힘들다”면서도 “하지만 유통업계가 견뎌내기 힘든 수준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중재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결정서

주문

피신청인은 2012년 8월 3일까지 신청인 1.에게 금 1,000,000원을, 신청인 2.에게 금 1,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인터넷한국일보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서울경제 2012. 6. 24. 자 경제면「[대한민국은 지금 세일중] 백화점 역대 최장기 세일… 마트도 50% · 최저가 할인전」제목의 기사(이하 ‘조정대상기사’라고 한다)를 통해 신청인의 초상을 보도하였다.

나.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보도하여 초상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2012서울조정975)을 하였다가,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을 따르기로 하고 중재신청으로 전환하였다.

다. 이 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도 역시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을 따르기로 하고 중재전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권리라 할 것이다.

이러한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 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살피건대, 조정대상기사는 정보의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이나 그 초상을 촬영함에 있어 미리 신청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 배제해도 용인될 만큼의 긴급성도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장면이 비록 신청인들의 사적인 사항에 초점을 두고 촬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표될 정도로 중대한 필요성에 의해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알리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초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는 등 심한 불쾌감을 느껴 정신적 평온의 침해를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 보도경위, 보도 내용 및 신청인의 나이 · 직업, 피신청인측 인터넷 기사에 대한 후속조치 등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신청인 1.과 신청인 2.에게 각각 금 1,000,000원으로 한다.

3. 결론

해당 중재부는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07. 24.

중재결정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각 100만 원 지급



사례 38

알루미늄 호일의 문제점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알루미늄 호일 생산 업체의 대표인 신청인에게 제작 의도를 숨기고 취재,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1507, 2012서울조정1508(병합) 각 손배청구

신 청 인 : 신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매일방송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2. 10. 1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알루미늄 호일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알루미늄 생산업체에 근무중인 신청인과의 인터뷰 장면을 방영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가 알루미늄 호일에 대한 정보 방송 인줄로 알고 있었고, 보도된 내용과 같이 제품의 문제점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의 취재라는 사실은 몰랐으므로 '동의를 벗어난 초상의 사용'이라 주장하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①

MBN : 「생활의 재발견」 프로그램 '알루미늄 호일의 진실'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2일자 23:00)

내 용 : ▷ 기자 : 그렇다면 알루미늄 호일은 언제 처음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것일까. 1910년 스위스에 한 입연 공장에서 처음 개발되었다.

▷ 자막 : 초기에는 담배와 과자 포장지로 사용되다가 1940년대 한 호일 제조자 영업이사가 추수 감사절 칠면조 포장에 호일을 사용하며



미국 전역의 가정에 보급됨

- ▷ 인터뷰 (신○○) : 저희 사업장에서는 15m 기준으로 (하루) 평균 1만개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 ▷ 기자 : 공기와 빛을 차단해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뛰어난 알루미늄 호일
- ▷ 자막 : 차단성이 높아 박테리아 성장 억제에 효과가 뛰어난 호일
- ▷ 기자 : “그런데 알루미늄이 문제다”

②

인터넷 MBN : 『2회 - 사골국 그 불편한 진실, 알루미늄 호일의 진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2년 11월 9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해당 조정대상보도의 다시보기 영상 중 신청인을 알 수 있는 부분(초상, 회사주소, 성명 등)을 모자이크 처리한다.
3. 피신청인이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11. 05.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00만 원 지급



사례 39

신청인이 환경미화원 시험에 응시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1669, 2012서울조정1678(병합) 각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1. (주)뉴스1, 2.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2. 11. 27.

사건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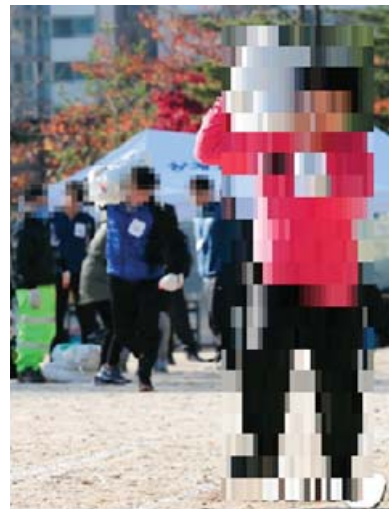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환경미화원 선발 실기시험 개최 사실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모래주머니를 메고 달리기하는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이 촬영되는 데 동의한 적이 없고, 신문이나 포털사이트 등에 신청인의 사진이 게재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 바가 없다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3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1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양 당사자들이 동의하여 이 결정은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①

뉴스1 코리아: 『**힘찬 출발**』 및 『**젓먹던 힘까지**』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5일자)

내 용 : 15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근린공원에
서 열린 환경미화원 선발 실기시험에서 응시자들이 25kg 모래
주머니를 메고 25m 왕복 달리기 시험을 치르고 있다. 노원구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6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는 134명
이 응시해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②

머니투데이 : 『 '힘찬 출발' 』 및 『 '젓먹던 힘까지' 』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5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의 보도내용 참고>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게 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1.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한다.
-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게 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2.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문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들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0.

조정예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조정예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00만 원 지급



사례 40

신원 비공개로 신청인의 주택담보 대출 사례를 인터뷰 했는데, 실명과 초상을 그대로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중재56, 2012서울중재57(병합) 각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2. 주식회사 아이엠비씨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2. 11. 26.

사건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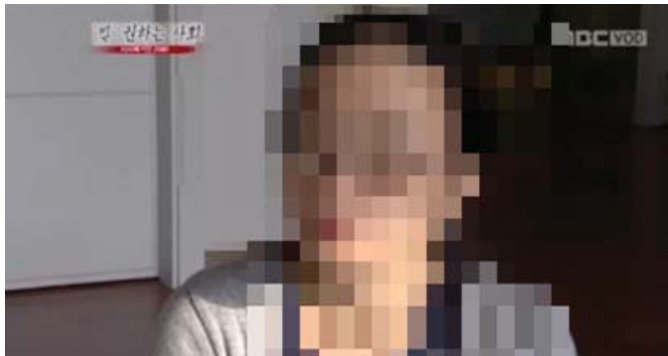
- 피신청인들은 2012. 11. 25.자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과 해당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빛' 권하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의 초상 및 실명 등을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초상과 실명 등 신상을 보도하지 말 것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내보내 초상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3천만 원을 구하는 조정신청(2012서울조정1679, 1680(병합))을 하였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1차 조정기일 심리전에 양 당사자가 관련 분쟁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였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중재대상보도

①

MBC-TV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835회 - 빛 권하는 사회'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25일자 23:15)

내 용 : ▷ 기자 : 서울 ○○동에 사는 김○○씨. 4년 전인 2008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4억5천만 원에 샀습니다. 은행에서 2억 4천만 원을 빌렸는데 3년 동안 한달 70만 원씩 이자를 내고 그 이후 10년 만기로 원금과 이자를 매달 150만 원씩



값는 조건이었습니다. 큰 빛이었지만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아 별로 망설이지 않고 매입하였습니다.

▷ 인터뷰 (김○○) : 아이들이(커서) 왜냐하면 싸게 나왔었고 그때 집을 넓혀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마음 먹었을때 하자고 그래 가지고.

▷ 기자 : 그런데 불과 몇 달 후 불어닥친 미국발 금융위기에 김씨 가정은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 인터뷰 (김○○) : 남편직업이 경기를 타는 그런 직종이에요. ○○대리점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경기가 나빠지니까 맨 먼저 살림이 쪼들리니 보험 해약하고 가입안하고..

▷ 기자 :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 김씨는 생활자금 5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탔고 이자는 130만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이후 몇 년간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자 김씨는 이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그나마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집을 내놓은지 1년이 넘어서야 팔았는데 처분가격 3억6천만 원. 1억 가까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동안 이자만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니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 인터뷰 (김○○) : 은행에 비싼 월세 내고 산거예요. 집을 사면 은행만 배불리게 먹이는 것밖에 안되고 집이 있음으로 더 빈곤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 기자 : 결국 김씨는 다음달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근처 다세대주택으로 이사를 갑니다.

②

iMBC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다시보기](#)』 835회』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5일자)

내 용 : <조정대상제도 ①의 보도내용 참조>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게 일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게 일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2012년 12월 14일까지 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1.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주식회사 아이엠비씨는 2012. 11. 25.자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과 해당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빚' 권하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의 초상 및 실명 등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초상과 실명 등 신상을 보도하지 말 것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하여 초상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2012. 11. 27.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각 금 30,000,000원을 구하는 조정신청(2012서울조정 1679, 2012서울조정1680)을 하였다가, 2012. 12. 7.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재절차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판 단

인격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 음성, 성명 및 사생활에 대하여 갖는 이익, 즉 사람이 자신의 신상에 관한 부분이 함부로 공표되지 아니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권리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인격권 특히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

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기사가 신청인의 초상 등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표될 정도로 중대한 필요성에 의해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알리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초상과 실명, 나아가 사생활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는 등 심한 불쾌감을 느껴 정신적 평온의 침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보도경위, 보도 내용 및 신청인의 직업, 피신청인측 인터넷 기사에 대한 후속조치 등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 3,000,000원으로 한다.

3. 결론

당 중재부는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0.

중재결정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300만 원 지급

